

발 간 등 록 번 호

11-1311000-000245-01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5. 1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3) 특례 적용 유형

자전거도로 폭의 특례 적용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차도에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3-7 자전거 우선도로

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에 노면표시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다

나.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는 교통·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 【설명】

##### 1)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의 일부 구간, 혹은 일부 차로를 자전거 외에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표 3-9>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제한속도/교통량)

제한속도(km/h)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기준 교통량
20km/h	3,500대/일 이하
30km/h	4,250대/일 이하
40km/h	5,000대/일 이하
50km/h	2,500대/일 이하
60km/h	분리된 자전거시설 설치 권장

- 주 1) 제한속도 외 85% 교통속도(85th percentile speed)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주 2) 85% 교통속도 활용 시 <그림 3-14> 그래프를 바탕으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2)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 특수조건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나는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 노선 단절구간 상 물리적 여건의 의거하여 자전거 전용차로 혹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경찰이 포함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평균 교통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주간시간대(오전 7시~오후 7시, 단 동절기(11~2월)에는 일출후~일몰전)에만 자전거 우선도로를 운영하는 시간제 운영방안도 가능하다.

(3) 교통량조사 방법론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교통량조사 방법론은 「교통조사지침」에 제시된 교통량조사 방법론, 혹은 「교통량조사지침」에 제시된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 방법론을 준용한다. 다만, 교통량조사는 자전거 우선도로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외부기관(연구원, 업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가) 교통량조사 개념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 계획 노선의 특정지점을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 차종 등을 파악하는 조사로서, 자전거 도로교통계획 및 설계, 자전거도로 운영상태 분석, 유지관리 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